

[서식 예] 사실조회신청서 (국토교통부)

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

사 건 2018 가단 000 사해행위 취소 등

원 고 목 🗆 🗆

피 고 유 ● ●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오니, 이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사실조회 목적

사해행위 취소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는 바, 위 요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김●●의 적극재산으로서 부동산 보유내역 및 권리 변동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 이에 이 사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.

2. 사실조회 기관

「국토교통부」(소관: 주택토지실)

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(우)30103

3. 사실조회 사항.



별지 기재와 같음.

2018. 6. . 원고 🗆 🗆 🗆



사 실 조 회 사 항

2017. 1. 1.부터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 당시까지 사이에

소외 김●● (******- • • • • • • •) 이 소유하였거나,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 산(토지, 건물) 내역 일체.끝.



제출법원		수소법원	관련조문	민사소송법 제294조
제출부수		신청서 1부		
	의	법원은 공공기관·학교, 그 밖의 단체·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		
의		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		
		보관중인 문서의 등	본・사본의 경	당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
		에 근거하여 이들에?	레 보고를 구	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
		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함.		
	타	·법원의 감정촉탁에	대한 의료기]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
		실조회에 대한 대한	의사협회장의	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
		여 특별한 지식과 경	험을 요하는	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
		식, 경험을 이용하는	데 불과한 것	이며,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
		부는 궁극적으로는 그	그 당시 제반	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
		추어 규범적으로 판단	<u></u> 날할 수밖에 6	었으므로, 위 각 회보결과에 의
-1		료과오의 유무에 관형	한 견해가 포	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
7		이 의사에게 과실이	있는지 여부	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견해에
		기속되지 아니함(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12270 판결).		
		·사실조회 회보가 국	공문서인 경우	-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
		료가 없는 한 그 기계	내와 어긋나는	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
		에도 합리적인 이유의	의 설시도 없 여	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
		다고 배척한 원심판	결은 채증법	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임
		(대법원 1990. 11. 23.	선고 90다키	-21022 판결).